

지정기탁금 접수 검토의견

● 근 거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개 요

- 접수일자 : 2015. 3. 20.(금)
- 의뢰기관 :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 기탁내역
 - 기탁자 :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등 36개 업체
 - 금액 : 금147,961,819원
 - 기탁대상 :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 기탁사유 : 중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위한 장학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지원(지정기탁)

● 부서 의견

- 위 기탁자들은 (재)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추진하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사업에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하고자 사용 목적과 용도(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비지원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를 명시한 지정기탁서에 의거 기탁하였음.
- 적법하고 투명한 기탁금의 접수 및 사용을 위하여 중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 기탁자 및 기탁내역

● 안전 : 장학기금 지정기탁(2015. 3. 20. 현재)

(단위 : 원)

연번	기탁자	대표자	주 소	기탁금
			계(36건)	147,961,819
1	서울시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임만순	중구 다산로 253-1 (흥인동)	100,000
2	신당점현대자동차	이택진	중구 다산로46길 16 (흥인동)	100,000
3	신당중부점기아오토큐	양영철	중구 동호로 198	100,000
4	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	천만기	중구 중림로 10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상가 3-104	100,000
5	(주)시스원	이상훈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1,500,000
6	중구여성단체연합회	최우정	중구 다산로32길 5(신당동)	1,000,000
7	(주)모두스데이	맹찬호	중구 충무로9길 20(을지로3가)	1,000,000
8	(주)한서기획	지정섭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311(동보아파트상가 134호)	400,000
9	기아오토큐명동점	김현익	중구 삼일대로2길 90 (주자동)	100,000
10	신당점기아오토큐	김문성	중구 다산로40길 15 (신당동)	100,000
11	(주)링크케이(IBIS호텔)	윤용춘	중구 퇴계로 334	2,000,000
12	(주)우성안전	임준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200,000
13	제이비즈호텔(진지양인)	정봉원	중구 창경궁로 20	5,000,000
14	중구생활체육회	김용철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구민회관 3층	3,000,000
15	(주)참솔나무병원	김형광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2(가락동), 510(밀리아너1차)	200,000
16	구일상사	이은영	중구 퇴계로 217, 513호(충무로4가 진양아파트)	2,000,000
17	매일유업 종로·중구대리점	최우정	중구 만리재로 193. 104호(만리동1가, 서울역디오빌)	5,000,000

18	명동게스트하우스협의회	이운복	중구 퇴계로18길 67-9 (남산동2가)	1,000,000
19	명동애타워	주영규	중구 명동8길 52	10,000,000
20	대유농장	이천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상삼로 231-33	3,000,000
21	삼덕상공(주)	김권기	중구 퇴계로12길 49(회현동1가)	1,000,000
22	(주)케이씨에프에이	심상돈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10층	10,000,000
23	중구체육회	신홍식	중구 창경궁로 17	3,000,000
24	방산상기주식회사	강희석	중구 동호로 37길 20(주교동)	6,000,000
25	롯데호텔	송용덕	중구 소공동 1	5,000,000
26	(주)쌍용타운개발 피에프브이	백민철	강남구 삼성동 150-30 예성빌딩 4층	10,000,000
27	해양섬유(주)	양홍섭	중구 마장로1길 18(신당동)	3,000,000
28	중구배드민턴연합회	김경재	중구 창경궁로 17	1,000,000
29	서울시 중구축구연합회	문종수	중구 동호로 11라길 9	4,000,000
30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김정전	중구 세종대로2길 15	6,000,000
31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	윤영기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10층	2,000,000
32	제3기 중구 인문학 아카데미최고위과정	조 걸	중구 세종대로11길 26 (서소문동)	5,000,000
33	승례문장학회	정덕균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남창동)	6,000,000
34	신라삼계탕	남월진	중구 칠패로 27 (순화동)	10,000,000
35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 특구협의회	홍석기	중구장충단로 247 (을지로6가) 굿모닝스타패션몰 5층	10,061,819
36	아프로서비스그룹	최 윤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10층	30,000,000

>> 관련 법령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